##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**아 설 명**

- 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,□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안녕하십니까?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의원입니다.
- □ 「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□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202호 「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□ 외국인주민은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에 따른 주민임에도 불구하고,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.
  -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가 지급된 바

있으며, 추후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
- □ 이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외국인주민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,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외국인주민에게 균등한 행정혜택과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.
- 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